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8. 11. 26. (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8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2018년 11월 5일

3. 제안이유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단위: m², 천원)

사 업 명	구분	수 량	금 액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사업비 증액)	건물	0	1,107,035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967	2,279,474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967	2,403,768
합 계	3건	1,934	5,790,277

5. 검토의견

○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 개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제3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으나,
- 학교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1층은 필로티 구조(주차장)로,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할 계획이며,
-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대비 47%인 1,107,035천 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목적 교실의 변경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목적교실 증축 변경 사업비 내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적(m ²)	예 산 액 (천원)		
		2018년	2019년	계
제2차 수시분	967	99,600	2,237,797	2,337,397
제3차 수시분	967	99,600	3,344,832	3,444,432
증 감			1,107,035	1,107,03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현재 다목적교실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청주시, 충주시의 대응투자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목적교실 증축 재원별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일반회계(시청)	자체	소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2,279,474	1,320,000	684,000	275,474	959,474	
충주예성여자중학교	2,403,768	1,257,750	625,993	520,025	1,146,018	